

# 古書目錄의 改善과 發展을 위하여

千 惠 鳳

## 序 言

古書目錄에 對한 記事를 發表해달라는 請託을 받자 이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어떻게 하면 古書目錄을 올바르게 認識하고 因襲的인 在來方法을 止揚토록 할 것인가에 對한 問題였다.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에는 古書의 分類나 目錄은 高齡의 老人이 四部法을 適用시켜 書名基本記入으로 適當히 處理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 甚至於는 別로 古書의 所藏이 없다는 理由로 無關心을 表明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큰 過誤라고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古書目錄은 東書目錄의 一部分이므로 實務者나 教育者나 다같이 東書目錄을 擔當한 사람은 반드시 古書目錄에 對한 知識과 造詣가 있어야만 올바르게 맡은 바 任務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東書目錄規則의 構成內容을 보더라도 首肯 할 수 있거니와 또 古書에 對한 現代 解釋書와 批評書라든가, 그에 關한 研究書等에 있어서도 原書의 標目を 알아야만 올바르게 副出記入도 할 수 있고 著者 記號도 配當할 수 있는, 目錄의 實際的인 一面을 보더라도 證明될 수 있는 것이다. 西書의 古典作品에 對한 註釋書 批評書와 그에 關한 研究書는 目錄規則에 따라 올바르게 處理되고 있으면서도 東洋의 古書에 對해서는 그릇되게 다루어지고 있는것을 往往 目覩하는 일이 있다. 또 一方 現在 古書의 景印과 活印複製가

頻繁해지고 東洋學의 研究가 各種論文集 또는 單行本으로 續續히 刊行되고 있는것을 보더라도 이를 目錄하는 司書는 먼저 東洋의 古書目錄에 對한 知識이 있어야만 圓滿히 處理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猥濫된 일인지는 모르나 筆者는 이러한 생각에서 拙著인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를 土臺로 古書目錄의 改善과 發展을 위한 몇가지의 問題點을 提起하려 한다.

## 一. 古書目錄의 分割編成에 對한 檢討

우리나라 各圖書館의 在來 古書目錄을 綜覽하면 舉皆가 新書目錄과는 別途로 分割編成되어 있다. 古書만을 對象으로한 分割目錄體制에도 各各 長短點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利用者의 便宜를 中心으로 볼때는 長點(註1)보다 短點이 많은 것은 事實이다. 古書의 分割目錄에 對한 批判度는 最近 數個年에 걸친 새로운 圖書館學의 理論과 技術의 飛躍的인 發展으로 말미암아 더욱 高潮되었다. 이 態度는 言語와 文字에 拘碍됨이 없이 同一書 또는 同一主題의 圖書를 單一體系의 目錄으로 編成하여 利用者가 同一書의 여러版과 同一主題의 여러 圖書를 한곳에서 簡便迅速히 檢索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도 理由가 있지만, 또한 오늘날의 古書概念이 옛날과 같이 單純치 않고 複雜多端한데도 큰 原因

이 있는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古書라 하면 大體로 大韓帝國末期以前の 옛 著者の 著述을 楮紙 藥精紙等 옛종이에 木版 木活字 옛金屬活字 陶活字 等으로 박아냈거나 毛筆로 手寫하여 黃紙紅絲로 裝潢한 漢文으로된 東裝書(方冊 또는 線裝本)를 생각 하는 것이 通例이다. 勿論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典型的이고 傳統的인 古書의 概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古書의 概念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고 말할수 있다. 그 理由는 옛 著者の 著述을 著述年代 또는 刊行年代로 따져보아도 그 基準劃定이 困難하고 또 반드시 外部的인 形態가 東裝으로 裝潢되고 內容의 文字가 漢字라해서 古書라고 일컫는 것은 實質的乃至 普遍的인 意味에 있어서 古書가 될수 없기때문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言及하면

1) 著述年代를 基準삼아 大韓帝國末期以前에 著述行爲가 이루어진것만을 古書라고 일컫는다면 그 以後에 著述된것中에도 內容이 漢文이고 裝釘도 東裝이어서 古書의 範疇에 屬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를 不得已 新書로 看做하여야할 矛盾性이 드러난다.

2) 刊行年代를 基準삼아 大韓帝國末期以前에 刊行된것만을 古書로 認定한다면 大韓帝國以前에 著述된것이라도 그 以後에 上梓되던 古書라 稱할수 없게 되는 셈이 된다. 또 위 1)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大韓帝國以後에 出版된것 中에도 內容으로나 裝釘으로나 古書로 認定할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不得已 新書로 看做하여야할 矛盾性이 있다. 特히 後者に 있어서 古書는 著述即時로 鍍梓되는 것보다는 後世의 子孫들에 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一般的

인 傾向임을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3) 裝釘을 基準삼아 東裝書(漢裝書)를 全部 古書로 認定한다면 現代인이 著述한 것中 著者の 趣味에 따라 東裝으로 裝釘한것도 古書로 看做하여야 한다 反面 原來 東裝으로된 典型的인 古書를 現代에 와서 景印 또는 活印再刊하여 洋裝으로 刊行한것은 新書로 看做하여야할 矛盾性을 內包하게 된다. 이것은 다만 書架上의 裝釘別排列이 容易하므로 管理上 便利한 利點이 있을 따름이다.

4) 內容文字를 基準삼아 漢文으로 된것을 古書로 다룬다면 한글과 日語로된 古書도 적지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取扱할것인가? 또 現代인이 著述한 洋裝의 漢文書는 어떻게 取扱할것인가? 이것을 古書로 다루면 現代인의 百話文圖書도 內容文字가 漢字인데 이것도 古書로 取扱할것인가? 等々の 問題가 提起되므로 古書의 限界를 劃定하기가 困難하다. (註2)

이와같이 古書가 內包하는 概念이 曖昧하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위의 諸基準을 折衷한 立場에서 廣義로 解釋하여 大韓帝國末期以前の 著述은 言語와 文字에 拘碍됨이 없이 古書로 다루고, 그 以後의 것 中에서도 古典을 再刊하고 景印複製한것과 漢書等을 비롯하여 內容이 古典의 範疇에 屬할 수 있는것은 裝釘에 拘碍됨이 없이 古書目錄의 對象으로 삼지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말하자면 實質的인 意味에서 古書를 代表하는 目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性質의 古書目錄은 分割目錄으로서 獨立하기가 어렵다. 첫째로는 東裝書이든 洋裝書이든 그 裝釘에 相關없이 實質的인 古書로 認定되는 것은

다같이 目錄의 對象으로 삼았기 때문에 目錄을 따로 編成하고 藏書를 別架한다면 그 利用과 管理가 困難하다. 둘째로는 古典의 藏譯書 現代解釋書 및 같은 主題에 關한 研究書 등이 新書 目錄으로 分離 編成되기 때문에 同一主題의 것을 單一 目錄으로 集中 排列하지 못하고 新古書 目錄으로 分散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問題를 解決하려면 古書와 新書를 나누어 二元的인 目錄體系로 編成할 것이 아니라 筆者가 “古書의 分類問題”(註3)에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單一 目錄法과 分類法으로 다같이 整理하고 다만 藏書 排列時에 東裝書만을 特殊裝釘으로 取扱하여 一般圖書에서 分離 排列하며, 目錄은 어디까지나 單一體系로 編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야만 利用者가 同一한 主題의 資料를 索出하여 利用하는데도 新古書의 二元的인 目錄體系보다 훨씬 能率의이며 또한 書架上的 圖書管理도 便利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古書 目錄은 研究의 便宜上 東書 目錄에서 떼어낸대 不過하며, 本論題가 目的하는바는 單一 東書 目錄의 原理下에서 新書와 古書를 함께 編成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 二. 目錄記入의 合理化

學術은 나날이 發展하여 國境없이 傳播되며 交流되고 있다. 이러한 文化를 받아 드리는 곳이 圖書館이므로 近代의 圖書館은 國際性을 띤 文化의 薈源인 것이다. 이런 點으로 볼때 東洋의 典型的인 古典文化도 東洋人만이 研究하는 專賣特許가 아니고 世界的으로 研究의 對象이 되는 文獻이며 資料인 것이다. 例컨대 東洋의 古典

인 四書五經을 비롯한 諸家의 撰述書, 龍大한 佛典, 卷帙이 浩瀚한 各種史書類 등이 原典以外에 한글 日語는 勿論 世界主要國語로 藏譯과 解釋되고 研究되어 널리 普及되고 있으니 어찌 東洋의 固有한 在來文化라해서 東洋人만이 研究하는 學問이라 하겠는가? 國際的으로 文化交流가 活潑하면 活潑할수록 圖書館은 龍大한 資料와 利用者間的 媒介役割을 해주는 目錄의 組織에 있어서 國際的인 統一性을 圖謀하고 또한 過去와 現在는 勿論이요 未來에 對해서도 普遍妥當性과 發展性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一例로서 目錄原則에 對한 國際會議를 들수 있다. 國際圖書館協會聯合(IFLA)에 依해서 主催되고 있는 國際目錄會議는 漸次로 成果를 거두고 있으며, (註4) 1961年 10月 파리會合에서는 國際目錄原則에 對하여 共同으로 聲明하고 앞으로의 計劃을 決議하고 있는바 그 活動이 자못 期待된다. (註5)

그러므로 우리의 古書 目錄도 一律的으로 書名基本記入을 擇한다든가(新書는 著者名基本記入을 하면서도) 目錄記入形式과 記述를 目錄者의 自由裁量(go-as-you-please cataloging)에 따라 區區하게 하고 略記해서는 안된다. 또 目錄編成에 있어서도 古書와 新書를 分割하여 同一書와 同一主題를 分散시켜 利用者에게 不便을 주는 따위의 從來의 傳統的乃至 排他的인 固執을 버려야 한다. 반드시 國際的인 目錄規則의 原理에 立脚하면서 不足한 것은 이를 補充하고 曖昧한 것은 이를 具體化시키고 不必要한 것은 이를 削除하여 目錄記入의 合理化와 統一을 期하여야 한다.

위에서 言及한바에 따라 古書의 基本記

入의 合理化를 期하려면 新書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基本原則이 適用되어야 한다.

1) 著作內容에 對하여 責任을 질수 있는 著者를 뚜렷이 알수 있는것은 어느 것이나 다같이 著者名을 基本記入의 標目으로 잡아준다.

2) 著者가 未詳인것, 不確實하여 著者決定이 困難한것, 4名以上の 著作으로 主著者가 없는것, 옛官撰書 등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多數人의 著作으로서 어느 特定人에게 그 著作의 內容에 對하여 責任을 지을 수 없는것, 集書類(Collections)와 같이 여러 著者의 作品을 모은것도 어느 한 個人이 그 內容全體에 對하여 責任을 질수 없는것이기에 때문에 編者 또는 編輯者가 뚜렷이 表示되어있거나 特히 著名한 境遇를 際外하고는 다 같이 書名을 基本記入의 標目으로 잡는다.(註6)

3) 統一標目은 著者가 確實치않거나 不明인 初期의 作品으로서 原典名以外에 翻譯版에 따라 여러形의 書名이 있어 어떤것으로 基本記入의 標目을 잡을는지 分間할 수 없는것 또 適確한 著者로서 人格性을 把握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卷首題 또는 標題를 基本記入의 標目으로 내세우는것도 適合하지 않은것에 適用된다.(註7) 例를들면 前者는 著者가 曖昧하거나 全然 未詳인 古代의 詩 說話 戲曲 年代記 神話 傳說 등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原典名外에 여러나라의 言語로 各種多樣하게 書名이 만드러지고 있는 境遇인데 이때는 原典名이 아니면 自國語形의 慣用書名(Conventional title)을 골라서 統一標目(Uniform heading)으로 한다. 後者에 있어서는 佛典 및 其他 經典 등을 그例로 들수 있다. 佛典 및 其他 諸宗教의 經典

類는 大概 宗祖가 直接 記述한 것이 아니라 宗祖의 言行과 敎訓을 그弟子 或은 後世의 信者가 結集하여 만든 것이므로 뚜렷한 著者도 없고, 卷首 또는 標題紙에 있는 經典名 그 自體를 그대로 標目으로 하는것도 不適當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特殊한 性質의 作品은 그 圖書의 書名 또는 內容을 代用할 수 있는 適當한 記入語(entry word)를 만들거나 골라서 統一標目으로 하는것이이다.

4) 形式標目은 例컨대 現代의 法典 法令과 官廳의 團體著者에 있어서 國名을 基本記入의 標目으로하고 法典名 官廳名을 副標目으로 하는 境遇이다. 그러나 古書에 있어서는 別로 該當事項이 없으므로 이程度로 言及해 둔다.

그리고 基本記入에 있어서 個人著者의 記入形式은 著者의 本名을 姓부터 記入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는다. 그러나 著者에 따라서 本名以外的 이름을 慣用하고 있어 本名보다도 더 有名하게 알려지고 있거나 帝王 王族 僧侶 등과 같이 特殊形名을 使用하고 있는것은 一般의 慣用되고 있는 形名을 基本記入의 標目으로 삼는다. 또 姓名의 一部가 不完全한 著者로서 姓만 表示되었거나 이름 또는 號만 알고 姓을 알수 없는것, 父母 配偶者 子女 其他 主人의 이름으로 알려진것은 完全한 部分 또는 主人 등의 이름 다음에 關係를 表示하여 標目으로 하는 등의 例外的인 取扱을 한다. 目錄作成에 있어서 記入形式을 重要視하는 것은 標目的의 統一을 期하려는 데 있으므로 一旦 標目으로 採擇된 形式은 언제나 그대로 지켜져야하며, 그외의 이름으로부터는 參照를 해주어야 한다.

基本記入의 標目選定 및 記入形式(個人

著者)에 대한記入例와說明은“古書目錄에 있어서의當面한諸問題”36~110面을參考해주시기바란다.

### 三. 記述의 特有性

古書目錄의記述은一般圖書의境遇와같이一定한記述目錄規則에따라誠實히作成되면서도또한그特有性을充分히살려주어야한다.그것은記述의原來的目的이한圖書를他圖書와識別하기위하여그特徵을記述하고,또圖書의性格範圍書誌및他書와의關聯性等을올바르게理解시켜올바르게資料를選擇利用토록하기위하여說明하는것임을생각하면能히首肯할수있는問題이다.換言하면古書는新書와는달리大體로刊年表示가없는異版本이적지않고,物理的인形態도判異하다.또古書는稀覯資料의性格을 띠는것이 많으므로이에相應하는記述을하여利用者の理解를도와주는것은當然한일이라고생각한다.古書目錄의記述에있어서新書와는달리特히目錄者를腐心케하며技術을必要로하는것은刊年과版本을올바르게識別하는일이다.古書는刊記마저記載되어있지않은것이 많다.또刊記가있다하더라도 그것이重刊本 또는覆刻本이면서도初刊本 또는原刻本の刊記만을그대로表示하고重刊 또는覆刻한年代를表示하지않은것도적지않다.그러므로版式字體紙質 등의版本學的인研究로서刊年을推定하고同一書의他版本과識別을容易케 해주어야 한다.

對照事項에있어서東洋古書의特有한物理的形態的인面의黑口,魚尾,匡郭의크기및種類,行字數,界(野)線等을

追加記述하는것도그目的이바로여기에있는것이다.

要는古書目錄의記述에있어서는그圖書의識別上必要한諸事項을一般目錄規則에따라具體的으로記述할것은勿論이요特히版種과版式에對하여書誌學的史學的인方法을適用시켜利用者로하여금重刊本覆刻本보다는原刊本을擇케하고또惡書와僞書를避하고眞本과善本을耽讀研究할수있도록必要한事項을追加記述함이必要하다.그러기위해서는古書目錄을다루는司書는一般目錄規則을熟知하여야하는同時에어느程度의書誌學的인知識과經驗을얻도록研究하고努力하여야한다.

### 結 語

以上에서古書目錄에對한새로운認識과그改善 및發展을위한몇가지基本問題를言及하였다.

이로써보면古書目錄은分割目錄으로獨立編成하는것보다는東書目錄으로서單一體系의編成을하는것이 좋겠다.基本記入의標目은過去와같이書名을一律的으로擇할것이 아니라著作의內容에對하여責任을지는著者를主로基本記入의對象으로삼고그렇지못한것은目錄規則에定해진바에따라書名,統一標目等을記入語(entry word)로選定한다.그選定된記入語가個人著者인境遇는特히一定한形式을쫓아記入함으로써標目の統一을維持함이必要하다.그리고記述에있어서는一般目錄規則에따라記載하는것을原則으로하면서도古書의特有性을살려讀者의版本識別에도움이되도록必要한事項을追加記述함이必要하

다. 或 사람에 따라서는 이와같은 方法으로 古書目錄을 만드는 일이 基本記入의 標目을 一律적으로 書名으로 擇하고 또 記述에 있어서도 適當하게 略記했던 從來의 方法에 比하면 번거롭고 어렵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司書職을 技術職 또는 專門職이라 稱하고 또 圖書館業務의 理論 및 技術을 圖書館學으로 일컫는 오늘날에 있어서 目錄의 基本原則을 無視하고 唯獨 古書目錄만이 在來의 方法을 踏襲할 수는 없는 일이다. 目錄者의 便利主義를 爲主로 했던 從來의 觀念과 態度를 止揚하고 어디까지나 目錄의 原則에 따라 利用者의 資料 調査 및 索出에 便利하도록 目錄을 만드는 것이 司書로서의 頭腦이요 技術인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므로서 圖書館學도 다른 學問과 並行하여 發展할 것이다.

註 1) 長點으로서 例를 들면 어느 個人이 寄附한 古書를 永遠히 記念하기 위해서 特殊取扱한다든가, 現在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 있는 奎章閣 藏書와 같이 研究의 便宜를 提供하기 위하여 附屬시키고 管理를 맡긴 것은 그 自體의 本來의 藏書性質로 보아 本圖書館 藏書와는 別途로 分離시켜 取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註 2) 蔣元卿. 中國圖書分類之沿革. 臺灣, 中華書局, 民國46(1957) P. 187—189 및 伊木武雄 “和漢書目錄法の研究(2)” 圖書館雜誌, 96號(昭

和2年 11月號) P. 305—308.

註 3) 千惠鳳. “古書의 分類問題(下)” 도헌월보, 2—4(1961) P. 305—308

註 4) Susan M. Huskins. “Moving toward international cataloging agreement”, *ALA Bulletin*, 54—2(1960) P. 194—196에 掲載된 1959年度(7月19日—25日)의 英國 런던의 國際目錄會議보다도 1961年度(10月9日—18日)의 佛蘭西 파리會議에 이르러 더 큰 成果를 얻고 있다.

註 5) I. F. L. 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Preliminary official report*. Paris, 9—10th Oct. 1961 및 국제도서관 협회연합(I. F. L. A.) 목록원칙. “에비공식보고”, 이제칠 역. 도헌월보, 3—3(1962) P. 11—19.

註 6) *Ibid*, P. 9—10 11 works entered under title 및 標目 B·標目選定 12 集書類.

註 7) *Ibid*, P. 4—1의 5·2에 依하면 “著者名 또는 書名에 여러 形式이 있을 境遇의 個個圖書에 對하여 統一標目을 쓴다. 이때 統一標目은 하나의 特殊形의 著者名 또는 하나의 特定書名이 된다. 著者名 또는 書名으로서 그 圖書의 識別이 不適當할 境遇에는 適切히 書名에 代用될만한 統一標目으로 記入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狹義로 解釋하여 著者名 또는 書名으로서 그 圖書의 識別이 不適當한데에 代用되는 統一標目に 對해서만 研究의 對象으로 삼았다.